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9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어기구 · 정춘생 · 손명수
주철현 · 박균택 · 허성무
김주영 · 김의겸 · 김병주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지역특산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이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
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

가.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제3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4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및 제6호 중
“전통주 등”을 각각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전통주”를 “전통주(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전
통주에 한정한다)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통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술 중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
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

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청주 및
과실주

2.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중 소주·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3.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전통주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
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을 “경영컨설

팅 등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등의”를 “및 지역특산주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3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4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전통주”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전통주”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통주”를 “전통주 또는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32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3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주 지정의 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다목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u>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전통주</u>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전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에 따른 <u>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u> 와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에 따른 <u>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u> 가 직접 생산하거나 <u>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u>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지역특산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
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한 술

4. (생 략)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
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
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
을 생산하는 산업

6. ~ 8. (생 략)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
아 제조한 술-----.

가.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
별자치시·군·구에서 생
산한 농산물

4. (현행과 같음)

5.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
업”이란 전통주 및 지역특산
주를 생산하는-----
-.

<삭 제>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

제2장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

② -----
-----.

1.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2.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3.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4.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
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

-----전통주 및 지역특

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산주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전통주(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전통주에 한정한다) 및 지역특산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전통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술 중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의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청주 및 과실주

2.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의 증류주류 중 소주·일반증
류주 및 리큐르

3.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
의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주로 지
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전통주가 제1항에 따
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장·군수·구청장은 <u>전통주</u>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전수, 건전한 술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전통주</u>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전통주</u>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u>및 지</u> <u>역특산주의</u>-----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 -----<u>전통주 및 지</u> <u>역특산주</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u>전</u> <u>통주 및 지역특산주</u>----- ----- ----- ----- ----- ----- ----- ----- -----.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
--	---

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전
통주 및 지역특산주-----

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우선구매) -----

-----전통주 또는 지역특산주-----

-----.

제32조(자료제출) -----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

제33조(청문) -----

-----.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주 지정의 취소

<u>1.</u> (생략)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